

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(시설급여)

표준약관 제10068호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로 계약을 체결한다.

계 약 당 사 자				
이용자 (갑)	성 명		등 급 (인정번호)	
	주민번호		연락처	
	주 소			
	본인부담률	☐ 20% ☒ 12% ☐ 8%		
제공자 (을)	시 설 명	녹동어울림	시설종류	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	시설장성명	임 보 혜	연락처	061-842-1002
	주 소	전남 고흥군 도양읍 신정중앙길 79		
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	성 명		관 계	‘갑’의 (자)
	주민번호		연락처	
	주 소			

제1조 【 목 적 】

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 【 계약기간 】

① 계약기간은 2025 년 월 일 ~ 202 년 월 일

② ①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③ ‘을’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‘갑’(또는 ‘병’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은 이후 15일 이내에 ‘을’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

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갑’(또는 ‘병’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
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
⑥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3조 【 입소 이용료 납부 】

① ‘갑’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입소월 말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.(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)

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28 일 납부하기로 한다.(28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)

②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.

③ ‘갑’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농협 301-0072-3911-81(녹동어울림) 으로 입금 한다.

④ ‘갑’ 또는 ‘병’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·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·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별도 부담한다.

2024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2.07% 인상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시설 종류별 장기요양급여 비용(2025년)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녹동어울림비용(2025년)

구	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요양	노인요양시설	90,450	83,910		79,240	
	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	72,480	67,250		62,000	
비	상급침실 이용료	상급침실이용료없음				
	식재료비(1식)	1식 3,300원 * 3식 * 30일 = 297,000원				
	간식비(1회)	1일 1회 1,100원 * 30일 = 33,000원				
	이/미용료등	무료(자원봉사 이용시)				
	약제비, 병원이용료	개인이 이용한 병원치료비,약값은 별도부담				

[녹동어울림 이용절차 및 비용안내]

입소상담 → 건강검진서 제출 → 입소서류작성 → 입소

1. 본인부담금 = 본인부담금 + 식재료비 + 간식비 + 약제비 + 병원이용료
2. 협력병원은 윤호21병원을이용합니다.

보호자가 지정한 병원이 있는 경우 우선 이용합니다

3. 1년에 1회 전염병 검사비가 청구됩니다.

등급 갱신시 의사소견서 비용이 별도 청구됩니다.

[입소시 제출 서류]

1.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
2. 전염성 질환여부 확인용 입소 전 건강검진 결과서 1부 (입소전1개월이내)
3.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, 약 처방전(병원발급) 입소후 건강관리와 약처방 참고용
4.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1통(여르신), 도장

[입소시 준비 물품]

1. 계절별 의류(간편 실내복-상하 각 3벌씩/ 외출용 겹옷1벌 / 내복3벌 / 양말3켢레
2. 어르신 개인물품 - 개인물병, 칫솔, 양치컵, 틀니 보관함, 보습화장품,면도기
3. 기타- 어르신 평소 아끼시는 애장물품(가족사진, 책등)
4. 그 외 물품의 경우 기관과 상담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.

구분	일	요양 급여		공단부담금		요양급여		본인부담금(20%)		합 계
1 등급	30일	72,480	2,174,400	57,984	1,739,520	14,496	434,880		285,000	719,880
	31일		2,246,880		1,797,510		449,370	9,500	294,500	743,870
2 등급	30일	67,250	2,017,500	53,800	1,614,000	13,450	403,500		285,000	688,500
	31일		2,084,750		1,667,800		416,950	9,500	294,500	711,450
3-5 등급	30일	62,000	1,860,000	49,600	1,488,000	12,400	372,000		285,000	657,000
	31일		1,922,000		1,537,600		384,400	9,500	294,500	678,900
구분	일	요양 급여		공단부담금		요양급여		본인부담금(12%)		합 계
1 등급	30일	72,480	2,174,400	63,782	1,913,480	8,698	260,920		285,000	545,920
	31일		2,246,880		1,977,260		269,620	9,500	294,500	564,120
2 등급	30일	67,250	2,017,500	59,180	1,775,400	8,070	242,100		285,000	527,100
	31일		2,084,750		1,834,580		250,170	9,500	294,500	544,670
3-5 등급	30일	62,000	1,860,000	54,560	1,636,800	7,440	223,200		285,000	508,200
	31일		1,922,000		1,691,360		230,640	9,500	294,500	525,140
구분	일	요양 급여		공단부담금		요양급여		본인부담금(8%)		합 계
1 등급	30일	72,480	2,174,400	66,682	2,000,450	5,798	173,950		285,000	458,950
	31일		2,246,880		2,067,130		179,750	9,500	294,500	474,250
2 등급	30일	67,250	2,017,500	61,870	1,856,100	5,380	161,400		285,000	446,400
	31일		2,084,750		1,917,970		166,780	9,500	294,500	461,280
3-5 등급	30일	62,000	1,860,000	57,040	1,711,200	4,960	148,800		285,000	433,800
	31일		1,922,000		1,768,240		153,760	9,500	294,500	448,260

■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

제4조 【 계약자 의무 】

‘갑’과 ‘을’ 그리고 ‘병’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① ‘갑’의 의무

1. 월 이용료 납부
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3.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4.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
② ‘을’의 의무

1. ‘갑’의 건강관리 협조
2. ‘갑’의 신변이상을 ‘병’에게 즉시 연락
3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4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5. 기타 ‘갑’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③ ‘병’의 의무

1. ‘갑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2. ‘갑’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3.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4. ‘갑’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‘을’에게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
제5조 【 계약해지 요건 】

① ‘갑’의 해지

1. ‘갑’과 ‘병’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‘을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‘을’의 해지

1. ‘갑’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2.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3. ‘갑’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제6조 【 퇴소 】

- ① '을'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'갑'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'갑'과 '병'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,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'을'에게 제출하고 '을'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'병'(또는 '갑')에게 통보 후 '을'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'갑' 또는 '병'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③ '을'은 '갑'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'갑'이 지정한(또는 '병')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

제7조 【 입소물품 】

'갑'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'을'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.

제8조 【 면회 및 외출·외박 】

- ① '갑'의 면회시간은 매일 09:00시부터 21:00까지로 한다
(단 '갑'과 '을' 또는 '병'이 동의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).
- ② '갑'은 외출·외박시 사전에 '을'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'을'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'갑'이나 '병'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'을'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.
- ④ 외출·외박 중 '갑'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'갑' 또는 '병'은 '을'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9조 【 시설관리 】

- ① '을'은 보건, 위생, 방범,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'을'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.

제10조 【 건강관리 】

- ① '을'은 '갑'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'갑'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'갑'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が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(교통비, 외부간병인 등)는 '갑' 또는 '병'에게 별도 징수한다.
- ④ '을'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,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, 갑의 건강유지,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

- ⑤ '을'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.

제11조 【 시설물 배상 】

- ① '갑'은 '을'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'갑'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'갑' 또는 '병'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- ② '갑' 또는 '병'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'을'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'갑' 또는 '병'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 【 위급시 조치 】

- ① '을'은 '갑'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, '갑'(또는 '병'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'병'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'병'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'갑'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'을'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'병'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단 '병'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, '을'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'을'은 '갑'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'병'과 정산할 수 있다.

제13조 【 임종 및 장례 】

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

-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
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'병'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 2. 장례는 '병'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.
- ② 무연고자
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'을'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
 2.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 3. 1개월 이내 관할 동(읍, 면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제14조 【 식사 및 간식 】

- ① '을'은 1일 3식 및 간식을 '갑'에게 제공하며, '갑'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. 특별식(경관급식비 등)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/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'갑' 또는 '병'이 별도 부담한다.
- ② '을'은 식단표 및 간식제 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'갑'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 【 요양실의 배정 】

‘갑’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, 입소 후 ‘갑’의 건강상태, 수발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‘갑’ 또는 ‘병’의 의견을 반영하여 ‘을’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16조 【 개인정보 보호의무 】

- ① ‘을’은 ‘갑’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② ‘을’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‘갑’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③ ‘갑’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(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) 으로 한다.
- ④ ‘갑’은 ‘을’이 수집·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⑤ ‘을’은 ‘갑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17조 【 기록 및 공개 】

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8조 【 배상책임 】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 - 1.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‘갑’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2.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‘갑’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3.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‘갑’을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4.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‘갑’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은 ‘을’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 - 1.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
 - 2. ‘을’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‘갑’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3. ‘갑’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4. ‘갑’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제19조 【 이용계약서의 해석 】

-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-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.

202 년 월 일

(계약자) ‘갑’ 이용자 :

‘병’ 보호자 : (서명)

‘을’ 시설장 : 임보혜 (서명 또는 인)